

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상 규정 신규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비 고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정의) 이 기준에서 “종사자”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및 대학원생(학부학생 포함)을 말한다. | 제2조(정의) 이이 규정에서” 종사자”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, 대학원생(학부학생 포함) 및 협력관계에 있는 타 사 소속의 자로써 본 기관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취급하는 자 를 말한다. | 교내 구성원 외 협력관계에 있는 타 기관 소속 인원 추가 |